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0가단203569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선

변 론 종 결 2022. 3. 17.

판 결 선 고 2022. 7. 14.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및 별지2. 기재 중 2015. 1. 16. 이전 계좌이체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D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및 별지2. 기재 중 2015. 1. 16. 다음날 이후 계좌이체에 관한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원고에게, 피고 B은 19,496,370원, 피고 C은 16,6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 80%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가. 피고 B과 D 사이에 별지1. 기재와 같이 체결된 현금증여계약을 27,057,17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27,057,1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C과 D 사이에 별지2. 기재와 같이 체결된 현금증여계약을 17,300,70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17,300,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D을 2014. 4월 초순경으로부터 2019. 5. 25.경까지 경리직원으로서 고용하여 D에게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발생하는 금전거래를 기록하고 정리하는 업무를 맡겼다.

나. D은 2021. 5.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4. 6. 24.경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86,230원을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1.경까지 사이에 합계 1억 93,015,106원을 D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 등 명의로 된 계좌에 송금한 다음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후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 B, C은 D과 남매 사이이다.

라. 한편 원고와 원고 배우자는 2019. 9. 25. D 및 피고들 외 1명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합26681호로 부당이득금 소송(이하 ‘관련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1. 9. 30. 'D 은 원고 A(이 사건 원고)에게 2억 55,086,4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별지1. 및 별지2. 기재 중 2015. 1. 16. 이전 계좌이체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적법여부원고는 별지1. 및 별지2. 기재 계좌이체 내역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현금증여계약에 의한 것으로, 이는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체금액이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취소를 구하는 위 계좌이체 내역 중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날인 2020. 1. 16.로부터 5년 전 날인 2015. 1. 16. 이전의 계좌이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채권자가 취소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행위 있는 날'이라 함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사해행위로서 주장하는 별지1. 및 별지2. 기재 계좌이체 내역 중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날인 2020. 1. 16.으로부터 5년 전 날인 2015. 1. 16. 이전의 계좌이체 부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2. 별지1. 및 별지2. 기재 중 2015. 1. 16. 다음날 이후 계좌이체(이하 '이 사건 계좌이체'라고 한다)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 가. 당사자들의 주장

### (1) 원고의 주장

D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경리직원으로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계좌이체 내역과 같이 자신 명의 계좌에서 피고들 명의 계좌로 현금을 계좌이체하였는데, 당시 D이 원고로부터 받는 급여는 월 140만원으로 이 사건 계좌이체 내역에 미치지 못한 금액이고, 당시 D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계좌이체행위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현금증여계약에 의한 것인바, 이는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들은 D의 가족들로서 당시 D의 채무초과 상태를 잘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원고는 D에 대하여 관련소송에서의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위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계좌이체 내역과 같은 현금증여행위의 취소를 구한다.

##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D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D은 신용불량자로 은행 계좌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피고들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후 자신의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로 모두 사용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 나. 판단

###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관련소송에서 D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2) D의 무자력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무가 있고, 별다른 적극재산은 없으므로, D은 이 사건 계좌이체 행위 당시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고, 이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추정된다.

### (3)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총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은, D이 2010년경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피고들을 포함한 D의 가족들은 D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2,000만원, 합의금 2,000만원 합계 4,000만원 정도를 지출한 사실이 있는데, 이후 D인 위와 같이 대납해준 위 재판비용을 변제하기 위해 피고들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제8호증의 1, 2의 이체내역, 피고 C 계좌 1,730만원, 피고 B 계좌 27,046,370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D의 피고들 계좌로의 송금행위 중 일부는 피고들에게 총국적으로

귀속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들이 위와 같이 변제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이라고 인정하는 금융 대부분이 이 사건 계좌이체로 인한 것인 점, ③ 피고 B은 이 사건 계좌이체 이외에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 B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에 관한 관련소송에서 일정한 금액(8,213,800원)을 부당이득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좌이체는 최소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고 한다)으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처분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D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4)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이 사건 처분행위로 인한 이 사건 계좌이체금액 합계는 피고 B의 경우 19,496,370원<sup>1)</sup>, 피고 C의 경우 16,600,000원으로, 위 증여 금액 전부가 취소 및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고, 이 사건 처분행위가 현금증여에 해당하므로, 그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한다.

#### (5) 소결

따라서 D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B은 19,496,370원, 피고 C은 16,6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1. 및 별지2. 기재 중 2015. 1. 16. 이전 계좌이체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계좌이체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승우

[별지1]

피고 D 의 피고 B 에 대한 현금증여계약 내역

가. 피고 D 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 B 에게 이체된 내용

| 출금계좌        | 이체날짜       | 이체금액(원)   |
|-------------|------------|-----------|
| 기업은행<br>{ } | 2014-02-10 | 1,700,000 |
| 기업은행<br>{ } | 2014-02-10 | 100,000   |
| 기업은행<br>{ } | 2014-12-31 | 750,000   |
| 기업은행<br>{ } | 2015-01-12 | 1,700,000 |
| 기업은행<br>{ } | 2015-01-12 | 100,000   |
| 소계          |            | 4,350,000 |

나. 피고 D 의 SC제일은행 계좌에서 피고 B 에게 이체된 내용

| 출금계좌          | 이체날짜       | 이체금액(원)   |
|---------------|------------|-----------|
| SC제일은행<br>{ } | 2014-09-11 | 1,601,000 |
| SC제일은행<br>{ } | 2014-10-10 | 1,601,000 |
| SC제일은행<br>{ } | 2015-03-10 | 1,701,000 |
| SC제일은행<br>{ } | 2015-03-10 | 100,800   |
| SC제일은행<br>{ } | 2015-04-10 | 1,801,000 |
| SC제일은행<br>{ } | 2015-05-11 | 1,801,000 |

|               |            |            |
|---------------|------------|------------|
| SC제일은행<br>( ) | 2015-05-11 | 141,000    |
| SC제일은행<br>( ) | 2015-06-10 | 1,801,000  |
| SC제일은행<br>( ) | 2015-06-10 | 141,000    |
| SC제일은행<br>( ) | 2015-07-10 | 1,801,000  |
| SC제일은행<br>( ) | 2015-07-10 | 141,000    |
| SC제일은행<br>( ) | 2015-08-10 | 1,800,000  |
| SC제일은행<br>( ) | 2015-08-10 | 140,000    |
| SC제일은행<br>( ) | 2015-11-10 | 2,000,000  |
| SC제일은행<br>( ) | 2015-12-10 | 2,000,000  |
| 소계            |            | 18,570,800 |

다. 피고 D 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 B 에게 이체된 내용

| 출금계좌        | 이체날짜       | 이체금액(원)   |
|-------------|------------|-----------|
| 국민은행<br>( ) | 2016-12-12 | 2,000,000 |
| 국민은행<br>( ) | 2017-01-10 | 1,400,000 |
| 국민은행<br>( ) | 2017-01-10 | 600,000   |
| 소계          |            | 4,000,000 |

라. 피고 D의 카카오뱅크 계좌에서 피고 B에게 이체된 내용

| 출금계좌         | 이체날짜       | 이체금액(원) |
|--------------|------------|---------|
| 카카오뱅크<br>{ } | 2017-10-22 | 69,300  |
| 카카오뱅크<br>{ } | 2018-11-08 | 67,070  |
| 소계           |            | 136,370 |

마. 개라별 합계

| 출금계좌          | 이체금액(원)    |
|---------------|------------|
| 기업은행<br>{ }   | 4,350,000  |
| SC제일은행<br>{ } | 18,570,800 |
| 국민은행<br>{ }   | 4,000,000  |
| 카카오뱅크<br>{ }  | 136,370    |
| 계             | 27,057,170 |

[별지2]

피고 D 의 피고 C 에 대한 현금증여계약 내역

가. 피고 D 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 C 에게 이체된 내용

| 출금계좌        | 이체날짜       | 이체금액(원) |
|-------------|------------|---------|
| 기업은행<br>( ) | 2015-01-05 | 200,700 |
| 소계          |            | 200,700 |

나. 피고 D 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 C 에게 이체된 내용

| 출금계좌        | 이체날짜       | 이체금액(원)   |
|-------------|------------|-----------|
| 국민은행<br>( ) | 2017-03-13 | 2,000,000 |
| 국민은행<br>( ) | 2017-06-12 | 2,200,000 |
| 국민은행<br>( ) | 2017-07-11 | 1,500,000 |
| 국민은행<br>( ) | 2017-08-11 | 1,500,000 |
| 국민은행<br>( ) | 2017-08-11 | 700,000   |
| 소계          |            | 7,900,000 |

다. 피고 D의 카카오뱅크 계좌에서 피고 C에게 이체된 내용

| 출금계좌         | 이체날짜       | 이체금액(원)   |
|--------------|------------|-----------|
| 카카오뱅크<br>《 》 | 2016-12-12 | 1,600,000 |
| 카카오뱅크<br>《 》 | 2017-03-13 | 1,600,000 |
| 카카오뱅크<br>《 》 | 2017-06-12 | 500,000   |
| 카카오뱅크<br>《 》 | 2017-07-11 | 1,000,000 |
| 카카오뱅크<br>《 》 | 2017-07-11 | 1,500,000 |
| 카카오뱅크<br>《 》 | 2017-08-11 | 1,500,000 |
| 카카오뱅크<br>《 》 | 2017-08-11 | 1,000,000 |
| 소계           |            | 9,200,000 |

라. 계좌별 합계

| 출금계좌         | 이체금액(원)    |
|--------------|------------|
| 기업은행<br>《 》  | 200,700    |
| 국민은행<br>《 》  | 7,900,000  |
| 카카오뱅크<br>《 》 | 9,200,000  |
| 계            | 17,300,700 |

1) 이 사건 계좌이체 금원 중 1,000원 또는 800원은 송금수수료 임이 분명하므로 제외하기로 한다.